특 허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20허7647 등록취소(상)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지순

피 고 B

미합중국

대표이사 C

변론종결 2022. 11. 29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9.

주 문

- 1. 특허심판원이 2020. 11. 5. 2019당268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

1) 등록번호/ 출원일/ 등록일: 제368528호/ 2015. 11. 18./ 2016. 8. 11.

2) 7 d: ECOSLINK

3) 지정서비스업: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,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, 컴퓨터네트워크 구성 서비스업, 컴퓨터관련 연구업, 컴퓨터관련 상담업, 컴퓨터관련 자문업, 과학기술연구관련 자문업, 컴퓨터소프트웨어설계업, 전기통신기술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의 상담업, 전기통신기기 설계업, 전기통신기술용 연구업, 통신기구 및 장비 디자인업, 통신기술 상담업, 무선통신/전자데이터처리/소비자전자제품/자동차 전자제품용 기술개발업, 전자부품연구개발업, 전기통신설비 설계업, 부품소재분야 기술가치평가업, 엔지니어링 관련 하이브리드 전기기술 정보제공 분야 기술공학 및 지원서비스업, 의료장비 연구개발업, 전기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엔지니어링업, 전기통신기기 연구개발업, 방송통신융합시스템연구업, 산업기술연구업

4) 권리자: 원고

나. 심결의 경위

1) 피고는 2019. 8. 23. 특허심판원에 "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권자,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 상

표법(2016. 2. 29.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73조 제1항 제3호(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와 실질적으로 같다)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."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.

2)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9당2683호로 심리하여 2020. 11. 5. "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원고,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누구에 의해서도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을 찾아볼 수 없고, 사용되지 않은 정당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."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(이하 '이 사건 심결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.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.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관련 법리

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1) '상표권자·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'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.

¹⁾ 상표법 부칙(2016. 2. 29.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된 것) 제2조 제2항 본문은 "이 법 중 심판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"라고 정하고 있다. 따라서 위 전부 개정된 상표법 시행 이후에 원고가 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개정된 상표법 규정이 적용된다.

나. 인정사실

- 1) 원고가 다음 항의 내용와 같이 주장하는 사실은,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, 자백간주 되었다(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150 제3항, 제1항).
- 2)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자인 원고는 '주식회사 D'라는 상호로 전기통신기기 설계업 등을 영위해 온 사람으로서, 2015. 12. 24. 홈페이지(https://E, 이하 원고가 운영한위 홈페이지를 'D 홈페이지'라 한다)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이를 원고의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.
- 3) 원고는 D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물 인터넷 관련 기술의 연구, 설계, 상담, 자문, 무선 의료장비 및 스마트 소켓에 대한 연구, 개발, 전기통신기기인 RF 안테나의 설계 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.
- 4) D 홈페이지에는 '**ECOSLINK**'라는 표장(이하 '이 사건 실사용서비스표'라 한다)이 표시되어 있다.

다. 판단

- 1) 이 사건 실사용서비스표 '**ECOSLINK**'는 이 사건 등록서비
- 스표 '**ECOSLINK**'의 색상만을 단순 변경한 것이어서, 이 사건 실사용서비스표의 사용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 사용에 불과하다.
 - 2)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'전

기통신기기 설계업', '무선통신/전제데이터처리/소비자전자제품/자동차 전자제품용 기술개발업', '전자부품연구개발업' 등에 관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였다.

라. 소결론

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 중 '전기통신기기 설계업', '무선통신/전제데이터처리/소비자전자제품/자동차 전자제품용 기술개발업', '전자부품연구개발업' 등에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.

한편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, 제2항, 제3항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, 동시에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사용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취소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고, 이와 달리 그 사용이 증명된 지정상품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므로(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후3220 판결 등 참조), 위와같이 원고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전체로서 기각되어야 한다.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다.

3. 결론

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형근

판사 박은희

판사 한지윤